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068
----------	------

제출년월일 : 2006. 4.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에 부합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 재원의 조성방법(제3조)
- 사업의 범위 : 자활공동체등 창업자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등(제4조)
- 기금의 관리 : 기금계좌를 설치 관리 · 운용(제5조)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등 자활사업실시기관(제6조)
- 사업자금등 용자 및 상환(제9조)

3. 관계법령 : 복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07181호 : 2004. 3.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7796호 : 2005. 12. 2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877호 : 2003. 1. 2]

4. 의안전문 : 복임

5.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붙임 : 1. 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발췌분) 1부.
 3. 관련공문 사본 1부.
 4. 제천시생활보장위원회 현황 1부.
 5.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제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라 함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천시 출연금
2. 제천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6.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4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4.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년도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②기금은 시금고 및 타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 ③기금은 제2항의 해당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공동체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생업자금용자를 받은 자로서 전세점포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창업자

제7조(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등 융자 및 상환) ①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의거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

④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 간에 이자변동이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9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영 제2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사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방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결손 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4. 3. 5. 개정 법률 제07181호]

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

-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3.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인 이내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2003. 1. 2. 개정 대통령령 제17877호]

제28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 ①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 (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의 구성에 있어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 ①시·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 ②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1조(보장기금의 설치)

①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

- 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
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제정 및 기금조성 출구

-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2300(2005. 10 .5)호 및 행자위 감사(2005. 10. 5)와 관련입니다.
 - 2005년 상반기 현재 아직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이 있는가 하면, 조례가 제정되었어도 기금조성이 전혀 안된 시·군이 있어 촉구하도록 지적을 받은 바 대상 시·군에서는 빠른시일내 조례제정 및 기금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각 시·군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2005. 10. 1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미제정 시·군 : 충주, 제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

○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조성 시·군 : 청주 충북

불 임 2005. 6월말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 시·군별 세부현황 1부 꼴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 010-1234-5678 (사회복지관련 부서장)

and the other two were not mentioned. The first was a small, dark, irregularly shaped rock.

★ 사회복지서기

지방행정사무관

사회복지과정

국가인권위원회

협조자 피말행저조사

시행 사회복지과-13777 (2005.10.07) 전수 통지사항과-20320 (2025.10.07)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사단로 158(사단그 읍하동 99) <http://www.kci.go.kr>

전화: 043-220-3124 / 팩스: 043-220-3119 / 이메일: www.cbzr.net

제천시생활보장위원회현황

(2006. 3월 현재)

연번	구 분	위 원		성별	주 소	위촉구분 (위촉일자)	비고
		직 책	성 명				
1	위원장	시장	엄태영	남	천남동 12-2	당연직 (01.10.23)	
2	부위원장	부시장	이석표	남	천남동 12-2	위촉직 (05.07.06)	
3	위 원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남	천남동 12-2	위촉직 (06.01.31)	
4	"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남	천남동 12-2	당연직 (05.04.01)	
5	"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남	천남동 12-2	위촉직 (03.01.01)	
6	"	남천동현동장	유경임	여	청전동 653	위촉직 (00.10.01)	
7	"	사회복지협의회장	김정식	남	서부동 177	위촉직 (00.10.01)	
8	"	자원봉사센타소장	서영자	여	의림동 227-4	위촉직 (00.10.01)	
9	"	종합사회복지관장	진안숙	여	하소동 하소주공@ 204-202	위촉직 (05.03.01)	

※ “위촉구분”란은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으로 구분 작성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천시공고 제2006-199호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8일

제 천 시 장

제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에 부합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 재원의 조성방법 (제3조)
- 사업의 범위 : 자활공동체등 창업자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등 (제4조)
- 기금의 관리 : 기금계좌를 설치 관리 · 운용 (제5조)
-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등 자활사업실시 기관 (제6조)
- 사업자금등 용자 및 상환 (제9조)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 3. 28. 까지 제천시장 (참조 복지사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 640- 5392, FAX 640-540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